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082

○ 발 의 자 : 이종필 의원(찬성자 10명)

○ 발의일자 : 2016년 4월 6일

○ 회부일자 : 2016년 4월 11일

2.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과 국기의 점검 관리 권장, 가로기 게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올바른 국가 관과 애국심을 드높이고,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국기의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2016.4.18.~4.2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 지정과 가로기 게양 및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국기 게양·관리 및 국기선양에 대한 지원
제2조(정의)	- 국기, 국기선양, 가로기의 정의
제3조(국기의 게양일)	-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	- 국기의 무상 보급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시 관할구역 내인 사람 등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
제5조(국기의 점검·관리)	-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
제6조(가로기 게양)	각종 행사시 경축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에 가로기를 게양법인 및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 거함의 설치·운영)	-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 -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제9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 본 제정조례안은 국기의 무상 보급, 가로기 게양,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 시·도에서 유사조례 제정·운용중(참고자료 1 참조)
- 다만, 본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사한 조례안이(「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김기만의원 2016.2.1. 발의,「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김인호의원 2016.3.16.))발의되어 있는바 조례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국기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국기와 국기선양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기선양"에 대한 정의는 표준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표준안)
국기선양의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
정의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	하는 일체의 활동

2) **국기의 게양일**(안 제3조)

- 안 제3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1)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국기게양일은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과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국기의 게양일을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국기의 게양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국기의 게양일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¹⁾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다만, 다른 시·도의 경우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29일)의 조기 게양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타 시·도의 국기게양일 규정현황 〉

연번	자치단체	국기게양일	비고
1	강원도	1. 강원도민의 날 (매년 7월8일) 2. 경술국치일(8월29일)의 조기게양 3. 그 밖에 강원도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2	경기도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그 밖에 경기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3	경상북도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경상북도민의 날(매년 10월 2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4. 그 밖에 경상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4	대구 광역시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5	세종 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인 7월 1일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6	울산 광역시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울산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7	인천 광역시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8	전라남도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전라남도민의 날(10월 25일) 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4.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9	전라북도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전라북도민의 날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10	충청북도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충북도민 체육대회 기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11	대전 광역시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전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및 그 전·후일(9월 30일 및 10월 2일) 3. 광복절 및 그 전·후일(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4. 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12	경상남도	1. 도지사가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날 2. 경상남도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3)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는 시장 및 구청장으로 하여금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무상 지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l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하고 있음.

< 국기 무상 지급 대상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 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시 관할구역 내인 사람
- 동 조항에 따라 국기의 무상 지급 대상(2016년 1월 기준)은 80만 2천여명으로(5호 제외), 시중의 국기 평균단가*(4,000원)를 고려하면 약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
 - *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기선양회의 보급형 규격(600×900) 판매가
 - ※ 강북, 노원, 영등포구에서는 국기의 무상 보급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국기 무상 지급 대상〉

(단위 : 명)

연번	자치구	계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국기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환자
	서울시	802,925	262,372	392,824	133,623	14,106
1	종로구	12,255	4,361	6,190	1,500	204
2	중구	11,370	3,989	5,758	1,430	193
3	용산구	17,703	6,011	8,323	3,047	322
4	성동구	22,292	7,274	11,754	2,878	386
5	광진구	24,408	7,497	12,501	4,022	388
6	동대문구	32,934	11,506	15,977	4,886	565
7	중랑구	41,140	14,944	19,954	5,618	624
8	성북구	39,017	12,795	18,067	7,502	653
9	강북구	38,383	14,673	17,245	5,929	536
10	도봉구	29,845	9,655	14,852	4,729	609
11	노원구	63,065	24,941	27,399	9,930	795
12	은평구	45,549	17,599	21,405	5,832	713
13	서대문구	25,170	7,203	12,520	5,017	430
14	마포구	27,066	7,752	13,836	5,008	470
15	양천구	33,372	10,478	17,270	5,030	594
16	강서구	57,679	20,238	28,001	8,527	913
17	구로구	33,140	8,442	17,277	6,757	664
18	금천구	23,330	9,536	10,899	2,555	340
19	영등포구	27,893	8,627	14,791	3,958	517
20	동작구	28,930	7,148	14,592	6,566	624
21	관악구	39,132	12,379	20,231	5,760	762
22	서초구	22,498	4,759	10,894	6,273	572
23	강남구	34,879	11,550	15,813	6,886	630
24	송파구	38,340	9,205	19,580	8,712	843
25	강동구	33,535	9,810	17,695	5,271	759

[※] 기초생활수급권자(희망복지지원과), 장애인(장애인자립지원과), 국가유공자(복지정책과) : '16. 1월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국가보훈처) : '15. 12월 기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포함됨)

[※] 출처 : 서울시 내부 조사자료

- 안 제4조 국기 보급사업 규정에 대하여 집행부는 보급 대상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임의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국기의 무상 보급을 통해 국기를 보유할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상 보급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국기의 무상 보급 절차, 횟수 및 이미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와의 중복지원 문제 등 국가·서울시·자치구와의 역할분담(보조금 매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본 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이미 국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 파악과 함께 국기보급만이 아닌 국기게양 등이 가능하도록 국기꽂이 등의 설치 및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국기 선양사업 및 단체 등의 지원(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2항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4조²)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 등 지원시 지원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5) 표창(안 제4조제3항)

○ 안 제4조제3항은 시장 및 구청장이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²⁾ **제24조(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포상기준 등이 미비한 바, 시행규칙에 국기 선양 실적에 따른 포상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제8조 생략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6) 국기의 점검·관리 등(안 제5조, 제7조)

○ 안 제5조와 제7조는 상위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l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관련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 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 ③. ④ 생략
-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u> <u>수거함을 설치·운영</u>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 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 국기 판매대 미설치 : 구 청사 3개소, 동 주민센터 1개소국기 수거함 미설치 : 구 청사 2개소, 동 주민센터 3개소(2016년 3월 기준, 참고자료 2)
- 현재 관련 법령(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현행「지방자치법」상 자치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의 타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가로기 게양 등(안 제6조)

 안 제6조제1항은 시장 및 구청장으로 하여금 각종 행사를 경축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6조제1항은 상위법에 따라 가로기 게양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조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과 유사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제정안	수정의견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 및 구청장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 및 구청장			
은 <u>각종 행사시 경축하기 위하여</u> 주요	은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조(가로기 게양) ① <u>가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양</u> <u>하며,</u> 제1호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한다.

-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 2. 국군의 날
- 3.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다.

8) 구청장의 의무 부과 문제(안 제4조~안 제7조)

-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시장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및 국기의 점검·관리, 가로기 게양,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조항의 내용중 구청장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2. 시. 군. 구
- ②~④ 생략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② 생략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정안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u>서</u> 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 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② 생략
- ③ <u>시장 및 구청장은</u>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 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u>시장 및 구청장은</u>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국기의 점검·관리) 시장 및 구청 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 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 도록 적극 권장한다.

수정의견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u>서</u> 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 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② 생략
- ③ <u>시장은</u>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 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u>시장은</u>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국기의 점검·관리) <u>시장은</u>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권장한다.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 및 구청장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 은 각종 행사시 경축하기 위하여 주요 사시 경축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시장 및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치·운영)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시민이 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등에** 국기 판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 매대를 설치·운영한다. 치·운영한다

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_국기 수거함을 설치· 설치·운영한다. 운영한다.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 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 수 있도록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국기선양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제정연도)	비고
1	강원도	강원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14.1.3)	
2	경기도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15.7.17)	
3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15.4.6)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국기사랑 지원 조례(12.8.1)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14.5.20)	
6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15.6.15)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15.10.1)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 한 조례(14.1.9)	
9	전라남도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15.4.8)	
10	전라북도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15.10.12)	
11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에 관한 조례(14.4.2)	
12	충청북도	충청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15.1.1)	
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3.11.8)	

참 고 자 료 2

서울시 자치구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현황

('16.3.31)

연번 자치구		기관수		국기판매대 설치현황		국기수거함 설치현황	
		구청	동 주민센터	구청	동 주민센터	구청	동 주민센터
1	종로구	1	17	1	17	1	17
2	중구	1	15	1	15	1	15
3	용산구	1	16	1	16	1	16
4	성동구	1	17	0	16	0	15
5	광진구	1	15	1	15	1	15
6	동대문구	1	14	1	14	1	14
7	중랑구	1	16	1	16	1	16
8	성북구	1	20	1	20	1	20
9	강북구	1	13	1	13	1	13
10	도봉구	1	14	1	14	1	14
11	노원구	1	19	1	19	1	19
12	은평구	1	16	1	16	1	16
13	서대문구	1	14	1	14	1	14
14	마포구	1	16	0	16	1	16
15	양천구	1	18	1	18	1	18
16	강서구	1	20	1	20	1	20
17	구로구	1	15	1	15	1	15
18	금천구	1	10	1	10	1	10
19	영등포구	1	18	1	18	1	18
20	동작구	1	15	1	15	1	15
21	관악구	1	21	1	21	1	21
22	서초구	1	18	0	18	0	17
23	강남구	1	22	1	22	1	22
24	송파구	1	27	1	27	1	27
25	강동구	1	18	1	18	1	18
	계	25	424	22	423	23	421